

별첨1.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한국YWCA 정책의제

한국YWCA연합회

목차

탈핵·기후위기 부문 / 1

1. 2050 탄소중립을 위한 2030 감축 목표 상향 및 단계적 계획 수립 / 3
2. 탈핵 정책 수립과 이행 / 5
3.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 / 7

평화·통일 부문 / 8

1. 평화구축 과정의 여성 참여 촉진 / 10
2. 평화협정 체결과 추진전략 마련 / 11
3. 평화교육 확산 및 사회 통합 기반 마련 / 13

성평등 부문 / 14

1.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재난 대응 정책 강화 / 17
2. 성평등한 노동환경 개선 / 18
3. 젠더폭력 처벌 및 예방 / 21
4. 학교 내 성범죄 대응 및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 도입 / 25

청년 부문 / 28

1. 청년 주거지원 제도 확대 / 31
2. 청년 고용 지원계획 확대 / 33
3.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 35

* 주: 성평등 부문 표 / 37

<탈핵·기후위기 부문>

<p>목표</p>	<p style="text-align: center;">탈핵·탄소중립 사회 구축</p>
<p>제안 과제</p>	<p>1. 2050 탄소중립을 위한 2030 감축 목표 상향 및 단계적 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 탄소중립목표 2010년 대비 45% 상향조정 및 각 부처 통합적·단계적 실행 계획 수립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계획 수립 : 에너지 효율 개선과 수요관리, 에너지 비용 정상화, 재생에너지 공공투자 확대(태양광·풍력 에너지 중심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제도 정비), 기존 발전회사 책임성 강화, 주민이익공유제와 같은 공감대 형성 정책 포함 ○ 탄소세 도입 및 탄소배출 기업 규제 제도 강화: 탈석탄 로드맵 포함 ○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사업 폐기: 가덕도, 새만금, 울릉, 제2 제주, 흑산 등의 공항개발계획 철회, 삼척을 비롯한 신규석탄 발전 건설 중단 ○ 기후위기 정책 수립 과정에 젠더 관점에 기반한 성평등한 참여 보장 및 관련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p>2. 탈핵 정책 수립과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투자 방향에 핵발전 배제의 원칙 포함 ○ 탈핵 로드맵 재수립 및 관련 법 제도화 :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신한울3,4호기) 및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금지, 부실 공사 핵발전소 폐쇄(한빛1,3,4,호기), 월성 핵발전소 2,3,4호기 조기 폐쇄 ○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 ○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대책 마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규제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위상과 역할 강화 ○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핵발전 확대 연구 예산 삭감 ○ 탈핵에너지전환체제를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교육 제도화 <p>3.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대응책 마련 ○ 수입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및 기준치 강화 ○ 핵발전소 인근지역 방사능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탈핵기후위기>

- 탈핵·탄소중립 사회 구축 -

-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파리 협약에 따라 지난 해 말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NDC)를 제출하였으나 유엔은 상향 조정을 요청하여 반려한 상황임. 지난 8월 통과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개발과 성장 논리를 바탕으로 함으로써 근본적인 기후위기 해결 방안을 이끌어내기에 부족한 법안임.
-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 및 에너지 관련한 생활 전반의 통합적이고 단계적인 체제 전환이 필수적임. 중앙 집중형이 아닌 지역 분산형이고 사회적 부담과 분배를 고려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에 대한 공공 투자 확대와 관련 법 제도의 재정비 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기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을 비롯한 취약 계층의 지원과 참여가 우선되어야 함.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선언에도 불구하고 국내 핵발전소는 여전히 잦은 사고 속에 운영되고 있으며 원전 수출도 지속되어 왔음. 세계1위 핵발전소 밀집도, 노후 핵발전소의 문제, 핵폐기물 관리 부재,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희생, 핵발전소 존재 자체의 부정의와 불평등, 무엇보다 위험성과 고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핵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최근 기후위기를 호기로 삼아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등 핵발전을 옹호하는 핵산업계 시도들이 있음. 치명적 위험성과 고비용의 핵발전은 국제적으로도 사양산업으로, 기후선진국들은 이미 핵발전을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음. 탄소국경세 등 산업 체제 변화에도 대비하여야 할 것임.
- 2023년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IAEA 및 미국 등을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과 각 부처의 협력으로 방류를 막아내는 동시에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여야 함. 더불어 국내 핵발전소 인근 지역을 포함한 방사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 현황과 필요성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줄여 기후 파국을 막을 것을 당부함.
- 하지만, 지난 8월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감축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권고에 따라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상응하는 2010년 대비 45%로 상향 조정되어야 함.¹⁾
- 탄소 예산 개념에 따른 국가 탄소 예산 산정과 탄소중립 경로 구성은 탄소중립에 필수 과정임. 단순 수치화를 넘어 산업, 교통, 건물, 에너지, 농축산업 등을 통합하는 구체 방안이 개발되어야 함. 석탄발전 중지, 재생에너지 전환, 내연기관차 중지 등의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함.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계획 수립을 통해 대규모 발전설비와 중앙 집중형 발전에서 소규모 발전소설비와 분산형 발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관련 제도들의 정비도 필요함.
-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분배에 근거한 정책 수립이 필수적임. 에너지 비용의 정상화,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공 투자 확대, 탄소세 도입 등이 진행되어야 함.
- 기후 위기가 여성들과 취약계층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과 지원을 위한 젠더 관점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 과정에 성평등한 참여가 보장되며 모든 기후 정책에 성별영향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정책 요구

- 2050 탄소중립목표 2010년 대비 45% 상향조정 및 각 부처 통합적·단계적 실행 계획 수립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계획 수립 : 에너지 효율 개선과 수요관리, 에너지 비용 정상화, 재생에너지 공공투자 확대(태양광·풍력 에너지 중심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제도 정비), 기존 발전회사 책임성 강화, 주민이익공유제와 같은 공감대 형성 정책 포함
- 탄소세 도입 및 탄소배출 기업 규제 제도 강화: 탈석탄 로드맵 포함

1) 최근 EU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였음. 또한 독일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기후보호법(Climate Action Law, 2019) 일부 위헌결정에 따라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65% 감축 및 2045년 탄소중립 달성으로 목표를 상향조정함. 미국, 영국 등도 온실가스 배출 정점 연도 대비 50-60% 감축을 약속함.

-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사업 폐기: 가덕도, 새만금, 울릉, 제2 제주, 흑산 등의 공항개발계획 철회, 삼척을 비롯한 신규석탄 발전 건설 중단
- 기후위기 정책 수립 과정에 젠더 관점에 기반한 성평등한 참여 보장 및 관련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정책 2 탈핵 정책 수립과 이행

▣ 현황과 필요성

-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을 통해 노후 핵발전소 고리1호기, 월성1호기는 폐쇄하고 삼척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는 하였음. 하지만 2019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실패로 건설 재개가 결정되고, 지난 7월 신한울 1호기 조건부 허가된 바 있음. 최근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핵발전 확대 움직임이 있음.
- 2029년까지 계획되었던 총 10개의 노후한 핵발전소가 폐쇄되고 신규 핵발전소 계획이 폐지될 수 있도록 탈핵 관련한 법 제도화가 시급함. 앞으로 2029년까지 수명을 다하는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폐지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신한울 3,4호기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신규 건설 금지 방향을 전력계획 반영 외에 관련 법제도 안에 포함해야 함. 부실 공사 한빛1,3,4호기의 조기 폐쇄, 차수벽 등 건물 문제로 삼중수소가 노출되어 왔으나 한수원이 은폐해왔음이 드러난 월성 핵발전소 2,3,4호기 역시 조기폐쇄 절차를 거쳐야 함.
-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을 통해 노후 핵발전소 고리1호기, 월성1호기는 폐쇄하고 삼척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는 하였음. 하지만 2019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실패로 건설 재개가 결정되고, 지난 7월 신한울 1호기 조건부 허가된 바 있음. 최근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핵발전 재개 움직임마저 있음.
- 2029년까지 계획되었던 총 10개의 노후한 핵발전소가 폐쇄되고 신규 핵발전소 계획이 폐지될 수 있도록 탈핵 관련한 법 제도화가 시급함. 사실상 차기 정부에게 인계된 신한울 3,4호기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백지화되어야 함. 부실 공사 한빛1,3,4호기의 조기 폐쇄, 차수벽 등 건물 문제로 삼중수소가 노출되어 왔으나 한수원이 은폐해왔음이 드러난 월성 핵발전소 2,3,4호기 역시 조기폐쇄 절차를 거쳐야 함.
- 고준위핵폐기물은 최소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핵폐기물 대책 없이 신규 핵발전소 건설되어옴. 2021년부터 월성핵발전소를 시작으로 국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소’가 포화되고 있으며, 삼중수소 노출 문제가 2019년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재공론화는 여러 가지 조작 의혹으로 공론화 자체의 신뢰가 무너져 버림.
- 핵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피해 주민들의 보상과 이주 대책이 강화되어야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규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살려 원자력규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독립성 강화와 위상 제고 필요함.
-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개발과 실현 가능성 및 경제성에서도 합리적이지 않으며, 기후 위기 대응의 효과 검증 안됨. 2018년 ‘IPCC 지구온난화 1.5도 보고서’는 핵발전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억제 경로 모델로 적합하지 않음을 명백히 함. 중앙

집권적인 핵 발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분산적이고 정의로운 재생 에너지 투자로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달성해야 함. 핵 발전 시스템의 부정의와 불평등, 위험과 희생 등을 끝내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야 함.

- 기후위기 대응과 탈핵에너지전환에 관한 교육 제도화로 인식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함.

■ 정책 요구

-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투자 방향에 핵발전 배제의 원칙 포함
- 탈핵 로드맵 재수립 및 관련 법 제도화
: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신한울3,4호기) 및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금지, 부실 공사 핵발전소 폐쇄(한빛1,3,4,호기), 월성 핵발전소 2,3,4호기 조기 폐쇄
-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
-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대책 마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규제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위상과 역할 강화
-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핵발전 확대 연구 예산 삭감
- 탈핵에너지전환체제를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교육 제도화

정책 3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

■ 현황과 필요성

-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2023년 봄부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핵발전소에서 1km 떨어진 바다에 방류를 결정 공표함.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ALPS)로 삼중수소(트리튬)을 기준치 40분의 1 이하로 희석하여 삼중수소(트리튬)은 희석 방류 계획이라고 함. 하지만, 방사성 물질은 반감기가 수백년이며 체내 축적되므로 희석한다고 해도 위험성은 여전히 있음. 또한, ALPS의 정화대상 62개 물질에 빠져 있는 탄소14 (C-14)가 오염수에서 상당량 검출됨.
- 9월 초 열린 IAEA총회에서 한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언급하고 결정 재고를 강조함. 반면, 일본은 삼중수소 처리에 관한 국제 기준 부합성을 강조하며 IAEA와 신뢰와 협력을 과시함. 국내 각 부처들의 협력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방류결정 철회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함.
-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측정이 강화되어야 함.
- 국내 핵발전소의 잦은 사고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안전도 간과할 수 없음. 지자체와 시민이 참여하여 방사능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함.

■ 정책 요구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대응책 마련
- 수입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및 기준치 강화
- 핵발전소 인근지역 방사능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평화·통일 부문>

<p>목표</p>	<p>평화 문화 · 체제 기반 구축</p>
<p>제안 과제</p>	<p>1. 평화구축 과정의 여성 참여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합의 이행 과정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제도화 방안 마련 ○ 평화구축 공적 기구 여성 참여율 50%로 확대 ○ 통일부 내 WPS(여성·평화·안보) 관련 기구 설치 ○ 남북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한 비정부여성기구 추진 <p>2. 평화협정 체결과 추진전략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 남북경협 합의 이행 추진단 설치 및 로드맵 작성과 거버넌스 구축 ○ 남북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국방예산 삭감 및 공격적인 무기 개발과 도입 중단 ○ 기후위기·코로나 시대 협력 체제 구축 및 북한 여성과 취약계층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 포괄적 대북 제재의 해제 방안 마련 <p>3. 평화교육 확산 및 사회 통합 기반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향민(탈북민) 여성폭력 피해 및 위기 상황 지원 위한 종합·원스톱 방안 마련 ○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청소년평화교육 전담 교육 기관 및 센터 개설 ○ 남북 청년세대의 교류협력기구 및 조직 설치 ○ 공직자 평화 교육 의무화 및 시민 평화교육 지원과 확대

<평화.통일>

- 평화 문화·체제 기반 구축-

- 남북기본합의서(1991)부터 6.15 공동선언, 그리고 평양선언과 판문점 선언까지 남북 간 합의들이 있었지만 이행되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음. 강력한 대북 제재와 비핵화 요구,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남북간의 문은 굳게 닫혔음. 적대적 군사 훈련 중지를 협의에 반해 한미공동군사훈련은 지속되었고 올해 판문점 선언 3주년 즈음에는 남북이 각기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 이름.
-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남북 간에 이루어진 제 합의사항을 추진함과 동시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협상안이 마련되어야 함. 여성과 취약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포괄적 대북제재 해제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남북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또한 공격적인 무기 도입에 사용되는 군사비를 국내 복지 및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남북간 경제적, 사회적 각 분야의 비정치적 교류들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줄 것을 제안함.
- 평화 구축 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국내 평화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기구에 성평등 담당 부서를 배치하며 성평등 의제를 발굴함으로써 민간 남북여성교류를 활성화하기를 요구함.
- 평화체제는 평화교육과 문화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청소년, 청년세대, 공직자와 일반 시민 등을 위한 평화교육을 지원하고 확대해야 함. 청소년 평화교육은 인권, 평등, 민주주의 등의 가치의 접목과 통합적 관점 하에서 가능함. 한 과목으로서가 아닌 전인적인 교육을 위한 방안 연구 필요함. 또한 통일 세대인 남북 청년들이 자치적인 교류협력기구를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배우고 평화 체제의 비전과 방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 필요함.
- 북향민(탈북민)들의 정착 과정 속에서 여성 폭력 및 위기 상황 지원의 문제가 드러남. ‘먼저 온 통일’로서 북향민들의 정착과 더불어 위기 상황에 대한 원스톱 종합 지원 대책이 요구됨.

정책 1 평화구축 과정의 여성 참여 촉진

■ 현황과 필요성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UNSCR) 1325호 이행을 위한 한국의 국가행동계획(Natioanl Action Plan: NAP)이 올해로 3기에 들어섬.
- 평화 구축 과정에서 국내외 여성들의 시민공공외교가 힘을 발휘하여 미 하원에서는 지난 회기에 이어 지난 5월에도 한반도 평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 평화 구축 과정에 WPS(여성·평화·안보) 관점을 통해 남북여성이 정상회담 이행에 참여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지원 등 협력 필요.
- 평화통일 관련 자문에 여성들의 구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상위 단위의 여성 비율은 낮은 현실임²⁾. 평화 협의와 구축의 공적인 기구에 여성의 참여율 확대되어야 함.
- 국내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에 성평등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화하며 여성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WPS 관련 부서 및 담당관 필요.
- 남북여성들의 학술교류, 성평등 사회를 위한 공감대 형성, 생활 밀착형 의제 중심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여성 비정부 기구 설치로 민간 남북여성교류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함.

■ 정책 요구

- 남북합의 이행 과정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제도화 방안 마련
- 평화구축 공적 기구 여성 참여율 50%로 확대
- 통일부 내 WPS(여성·평화·안보) 관련 기구 설치
- 남북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한 비정부여성기구 추진

2) 민주평통은 20기 자문위원 여성 비율을 40.2%(6천397명)로 확대하였으나, 간부 자문위원의 여전히 여성 비율은 낮음.

정책 2 평화협정 체결과 추진전략 마련

■ 현황과 필요성

- 올해는 판문점 선언 3주년이지만 남북 합의는 이행되지 못한 상태임. 한미는 선언 이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갈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오히려 선(先) 비핵화 요구와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은 군비 증강과 공격적 무기 도입으로 세계 군사력 6위에 오름.³⁾
- 지난 8월 한미공동군사훈련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선언이 이어졌지만 반영되지 않고, 9월엔 남북이 각기 미사일 발사를 통해 2018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에서 합의한 군사적 신뢰구축, 남북 군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음.
-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남북과 관련국들이 대북제재 완화와 비핵화를 위한 합의의 과정을 진행해야 하며, 추진전략과 구체적인 협상안을 마련하여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지속가능성을 가져야 함.⁴⁾
- 대부분이 무기체계 획득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는 2020년 국방 예산 33%를 차지함. 2022년 국방부 예산은 올해보다 4.5% 늘어난 55조 2천억 원으로 편성,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36.9%로 역대 정부 중 최대 증액수치임. 선제 공격과 보복 응징 등을 위한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이나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여타 공격적인 무기 체계 획득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남북간 불신과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 상실 원인이 됨. 군비 축소와 함께 코로나로 인해 확산된 국내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자원의 전환을 통한 평화 체제 구상이 필요함. 더불어 남북간 경제적, 사회적 각 분야의 민간 교류들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줄 것을 제안함.
- 포괄적 제재로 확대 발전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여성과 취약 계층의 삶에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⁵⁾, 포괄적 대북 제재의 해제와 함께 기후위기·코로나 시대를 극복해나가기 위해 남북 간 협력 체제 구축 필요함.

■ 정책 요구

-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 국방예산 삭감 및 공격적인 무기 개발과 도입 중단

3)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보고서(2021년 1월)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 평가지수는 6위, 북한은 25위에서 3단계 떨어진 28위임. 국방비 지출 규모도 남한은 8위, 북한은 59위로 평가됨.

4) 한국YWCA를 비롯하여 400여개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한반도중전평화캠페인'은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460여 명을 비롯하여 현재 10만 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음.

5) The Human Costs and Gendered Impact of Sanctions on North Korea, an international and multidisciplinary panel of independent experts, 2019.10.

- 기후위기·코로나 시대 협력 체제 구축 및 북한 여성과 취약계층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 포괄적 대북 제재의 해제 방안 마련
- 남북경협 합의 이행 추진단 설치 및 로드맵 작성과 거버넌스 구축
- 남북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정책 3 평화교육 확산 및 사회 통합 기반 마련

■ 현황과 필요성

- 한반도는 분단의 모순이 내재해온 긴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통일을 넘어 평화의 지향과 그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들을 통해 남남·남북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고 민주 사회로 회복해갈 수 있음.
- ‘먼저 온 통일’로 불리우는 남한 거주 북한민(탈북민)⁶⁾들의 생활고와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한 극단적 위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구성원의 2/3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정착 과정에서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음.⁷⁾ 정착을 위한 분절적인 지원⁸⁾을 통합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민족성에 바탕한 통일담론을 넘어 사회전반의 폭력 구조에 대한 성찰, 인권과 평등 및 민주사회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관점의 글로벌 평화교육이 요구됨. 평화교육이 특정 교과목을 통해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영역에서 통합적 접근이 되는 연구 개발 과정이 필요함.
- 남북한 청(소)년들이 만남과 교류로 이질화를 완화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남북 합의 통한 시민 청소년의 자치 교류협력 기구 설치를 제안함.
- 평화 문화 확산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확대가 필요하며, 공직자 평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평화 교육 의무화와 시민 평화 교육을 위한 지원과 확대 필요.

■ 정책 요구

- 북한민(탈북민) 여성폭력 피해 및 위기 상황 지원 위한 종합·원스톱 방안 마련
-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청소년평화교육 전담 교육 기관 및 센터 개설
- 남북 청년세대의 교류협력기구 및 조직 설치
- 공직자 평화 교육 의무화 및 시민 평화교육 지원과 확대

6)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2월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33,752명이며, 여성은 72%에 달함.

7) 2017년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성정현)에 의하면, 탈북여성 36%가 성폭력 경험을 겪었으며 이는 북한에서보다 남한에서의 피해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8) 탈북민 상담정보(통일부와 하나센터), 단전·단수·체납 등 위기정보(복지부), 탈북민 기본정보(통일부), 범죄가해·피해 등(경찰청), 미래행복통장 등 지원내역(하나재단)으로 기관별 운영되고 있음.

<성평등 부문>

<p>목표</p>	<p>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p>
<p>제안 과제</p>	<p>1.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재난 대응 정책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내 성주류화 업무 기능강화 및 예산 확대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 지방분권에 기반한 자율적이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운영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p>2. 성평등한 노동환경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임금 공시제 확대 실시 ○ 고용형태 공시제도에 임금 및 성별 정보 추가 게시 ○ 주권상장법인 기업 전수 대상 여성임원 할당제 확대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여성고용 준수율 개선 ○ 정부 지원 돌봄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처우 개선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선 ○ 중앙부처 고용 평등 노동정책 총괄 부서 복원 ○ 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복원 ○ 고용노동부 지원 민간고용평등상담실 확대 <p>3. 젠더폭력 처벌 및 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⁹⁾ ○ 성매매여성 인권보호 및 성매매 확산 방지를 위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 권력형 성범죄 사건 처리체계 작동방안 마련

- 온라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 공공부문, 학교 등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디지털문해교육, 성인지감수성 교육, 인권교육 체계 수립 및 시행

4. 학교 내 성범죄 대응 및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 도입

- 교원,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의무화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포괄적 성평등교육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의무화
- 예비교원 성평등교육 강화 및 자격화
- 학교 현장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점검 체계 확립 및 지표 개발 적용
- 성범죄 교원 교원자격박탈 및 신상공개 의무화
- 피해학생 보호 시스템 확립 및 강화
- 교육분야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확립
- 성평등네트워크 구축 및 시스템 체계화
- 성평등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교육 강화

9) 비동의간음죄 논의와 관련하여 유형력의 정도가 낮은 행위를 새롭게 성폭력범죄로 포섭하여 구성요건 1개를 추가하는 안으로 할 것인가, 성폭력법체계 전반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의 성폭력 처벌 규정들을 기본법인 「형법」으로 통합 배치하고 ‘간음’을 ‘성교’로, ‘추행’을 ‘성적 행동’으로 수정하는 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 비동의간음죄 구성요건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경우’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독일법은 전자, 영국법은 후자를 선택하고 있음. 대륙법 체계를 견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형법체계에서는 독일법 형태를 따를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담고 있는 영국법 형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성평등>

-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

- 문재인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약속하고,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부 공약을 제시하고 이행해옴. 하지만, 공약 이행률이 양질의 정책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근본적 해결에 다가가는 정책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전반적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내실화를 추구하는 정책 도입이 요구됨.
- 현재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의 기구의 조직과 기능은 성평등 정책 국가기구로서 효율적·효과적인 성주류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해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가 변화되어야 하며, 각 부처의 양성평등관련 기구들의 유기적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최하위이며 고위급 여성채용 비율을 포함하는 유리천장지수도 최하위임. 고용노동부 고용평등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성평등 임금 공개 등 적극적 고용조치를 강화하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및 사회서비스원 운영 기본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여성들에게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성평등한 노동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디지털성범죄 처벌 법안들이 도입되었으나 처벌 강화와 범위의 확대, 젠더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미비한 법 체계의 보완이 필요함. 스토킹처벌법과 인신매매방지법, 비동의간음죄 입법화, 성매매 피해아동과 청소년 보호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젠더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 함.
- 학교 교육 내용이 다양해지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교육을 실시하기에 시대에 뒤처지고 활용도가 떨어짐. 스쿨미투 등 교육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성범죄가 발생하였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교원 처벌의 재정비, 교육부 내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성평등 학교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정책 1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현황과 필요성

- 1998년 정무장관2실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여성정책추진을 위해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법률 발의권과 준사법권을 갖춘 여성부를 설치하였다가, 2005년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면서 보건복지부 소관의 건강가정기본법을 이관하고 성차별과 여성업무 중심에서 보육과 가족업무까지 확대함.
- 2021년 현재, 청소년 육성·복지 및 보호 기능까지 추가된 여성가족부와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개선을 목표로 설치된 8개 부처 여성정책담당관이 있음.
- 그러나 기존 여성가족부 조직과 기능 등으로 볼 때, 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국가기구로서 성주류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여성가족부 주도하에 성별영향평가(2005)와 성인지 예산제도(2009)를 시행하고, 2011년에는 독립된 「성별영향평가법」을 제정하면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연계를 강화하고 성인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성주류화 정책 간 상호 연결에 대한 근거 규정을 통해 법적 토대를 마련함.
- 성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성주류화 제도를 구축하면서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의 법적 기반을 다져왔지만, 제도와 현실간의 격차가 크며, 성주류화 추진 기구의 권한강화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즉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변화가 성평등정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기능 강화와 전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설치, 기구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정책 요구

- 여성가족부 내 성주류화 업무 기능강화 및 예산 확대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 지방분권에 기반한 자율적이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운영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정책 2 성평등한 노동환경 개선

■ 현황과 필요성

- 2019년 한국 성별임금격차는 32%로 39개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최대 국가 이자(Employment outlook, 2021),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최대 국가 및 30% 이상인 국가 14년째 유지하고 있음.¹⁾
- 월 평균 임금 성별 격차는 2010년 42.1%에서 2020년 35.3%가 되었으며, 2019년에 36% 미만 대에 진입함. 월 중위 임금 성별 격차는 2010년 40.2%에서 2020년 32.3%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속도가 더딘 상황. 2020년 기준 여성의 평균 월 임금은 205만 7천원, 중위소득은 189만 2천원이며 남성 평균 월 임금은 318만원, 중위소득은 279만 7천원인 상황임.²⁾
- 현재 상장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단에 한하여 성평등임금 공시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³⁾
- 상장법인 성별 임금 격차(2020년 기준 2149개사 대상)는 35.9%이며, 공공기관 성별임금 격차(2020년 기준 369개사 대상)는 27.8%임.¹⁰⁾
- 2021년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은 2,486개사가 선정됨. 이는 2018~2020년까지 지난 3년 연속 여성 고용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사업장임.¹¹⁾
- 여성은 2010년 기준 0.5%에서 2020년 0.1% 상승한 0.6%, 남성은 2010년 3.6%에서 2020년 0.9% 하락한 2.7%. 이에 따라 성별 격차는 2010년 -3.2%에서 2020년 -2.1%로 감소.¹²⁾
- 적극적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대상 기업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2020년 20.92%로, 2019년에 19.76% 전년 대비 0.8% 하락 후 상승함.¹³⁾
-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한국의 유리천장지수는 7년째 최하위이며, 성별임금격차(29/29), 여성임원 비율(29/29), 여성관리자비율(28/29)로 평가됨.
- 2022년 8월 5일부터 자산 총액 2조 이상 기업의 경우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는 법안이 도입되었으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장법인(2,246개)의 전체 임원 32,005명 중 여성은 5.2%(1,668명, '20년 4.5%), 2조 이상 기업(152개)의 전체임원 8,677명 중 여성은 5.7%(491명)인 상황임.¹⁴⁾

10)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보도자료(2021.9.1.) 양성평등 임금의 날'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 성별 임금격차 조사결과 발표

1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보도자료(2021.5.28.). 2021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12)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 관리자 비율

13) 노사발전재단, AA남녀근로자 현황 분석보고서(각 년도)

14)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보도자료(2021.8.4.). 2021년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 조사결과 발표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여성일자리 증가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대로 돌봄 일자리 증가함. 여성은 2010년 94만명에서 2020년 193만 4천명으로 99만 4천명 증가했으며, 남성은 2010년 19만 2천명에서 2020년 39만 4천명으로 20만 2천명 증가함.
- 사회서비스 돌봄 일자리는 시간을 바탕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함.
- 현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현재 통합정책국 소속) 업무는 2002년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확대와 유급화, 출산전후휴가가 90일로 확대되는 등에 따른 업무 증가
- 2008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법」으로 일가정양립 관련 업무 확대되고 정부의 모부성보호 관련 정책이 다양화됨에 따라 일가정양립 정책 확대
- 문재인 정부 지방노동청에 성평등 근로감독관 배치, 본부에 고용평등 근로업무 전담과가 없는 상태에서 업무 추진 한계
- 지방노동청의 고용평등과는 고용노동부(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1998년 처음 제정될 때부터 주요 부서로 존재, 이명박 정부 1년 6개월인 2010.7.2일자 시행 규칙에서 삭제되면서 고용평등과가 폐지되고 근로개선과로 통합

■ 정책 요구

<임금투명성 제고>

○ 성평등임금 공시제 확대 실시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성평등임금 공시제 도입: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의 성별 임금 현황을 공개하거나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의 성별 임금 현황을 공개하여 임금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성별임금현황 플랫폼 구축: 현재 Dart, 알리오, 클린아이에 산재해 있는 성별 임금 현황 정보를 단일 채널로 통합하여 운영하여 정보의 편의를 제공해야 함.

○ 고용형태 공시제도에 임금 및 성별 정보 추가 게시

-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고용형태공시제를 실시하여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은 4가지 고용형태에 대해 공시를 하도록 했음. ①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② 기간제근로자, ③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가내근로자 등), ④ 소속 외 근로자(용역·파견·하도급)임. 해당 제도를 보완한다면 임금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임.

<여성대표성 확보>

- 주권상장법인 기업 전수 대상 여성임원 할당제 확대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여성고용 준수율 개선

<돌봄 일자리 개선>

- 정부 지원 돌봄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처우 개선
- 방문 서비스 제공 일자리 이동 및 휴게 시간 근로시간 인정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근로기준법에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선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022년 1월 시행예정인데 5~49인 사업장 시행 3년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 직업성 질환 인정 범위 근골격계 질환 제외
-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및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질환 인정

<성평등 노동 추진체계 개선>

- 중앙부처 고용 평등 노동정책 총괄 부서 복원
-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평등 노동정책 총괄 국으로 과거 '고용평등국' 복원 필요
- 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복원
- 고용노동부 지원 민간고용평등상담실 확대

■ 현황과 필요성

- 디지털성범죄 처벌강화 및 처벌범위 확대 등 젠더폭력 처벌공백 해소를 위한 법제 준비가 이루어짐⁴⁾, 스토킹처벌법 및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이 이루어짐⁵⁾
- 성폭력범죄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서는 동의 없이, 또는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는 것을 처벌하는 비동의간음죄의 도입이 필요함. 최협의를 폭행·협박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 여부 및 정도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동의하지 않았지만 최협의를 폭행·협박이 없다고 해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해야 할 것임. 이러한 처벌의 공백을 해소한다면 성폭력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회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⁵⁾
- 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산업의 축소와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에 큰 역할을 한 부분이 있으나 성매매여성을 피해자와 행위자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성매매행위는 처벌하지 않지만 성매매행위자는 처벌받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성매매여성이 성매매행위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됨. 이를 통해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의 결여와 다변화되고 있는 성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임.
- 2011년 제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에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조를 완벽히 이행하라는 권고와 함께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음. 전 세계적으로 성매수 수요를 억제하여 인신매매범들과 착취자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매수행위에 대한 처벌과 알선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스웨덴, 아일랜드 등의 입법모델은 성산업 축소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음.
- 성매매 수요억제와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안이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되었고,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음.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를 내용으로 하는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

15) 이경환(2019),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2019.11.13. p.33.

비동의간음죄 도입의 반대논거로 대법원이 폭행·협박을 완화해서 해석하고(대법원 2005.7.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성폭력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판단(대법원 2018.10.25. 선고 2019도7709 판결)을 했으므로 굳이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으나 최협의를 위해 피해자의 저항이 기본적인고 주된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은 여전히 여전하므로 비동의간음죄 도입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안은 반성매매운동단체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요청되었으나 입법화되지 않았음.

- 일련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 공군 여중사의 성추행사건을 비롯하여 해군, 육군에서도 유사한 성추행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미 이러한 사건들의 발생으로 사후 대책들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도 미흡한 사건처리와 피해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사건들은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침해와 괴롭힘을 가하지만 조직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된 해결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각각의 피해자들은 1차적으로 조직 내에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조직 내에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노출되어 고립과 배제를 겪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¹⁶⁾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 정의가 처음으로 명시되어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규정되었다는 것은 의의가 있으나 처벌조항 등이 따로 규정되지 않아 실효성면에서 문제가 있음.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측면은 있으나 재판과정에서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될 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온라인에서의 2차 피해도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댓글창을 운영, 관리하는 포털 사이트 등 플랫폼의 책임 문제가 있음.¹⁷⁾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는 성범죄 관련 뉴스, 댓글금지에 관한 해결방안이 필요함.¹⁸⁾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은 폐지되었으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이 규정(제47조의2 신설) 되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2020.5.19. 개정, 11.20 시행).

16) 배복주(2021), “젠더폭력 사건의 공동체 해결과정에서 조직의 역할”, 여성과 인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년 상반기, p.53

17) 카카오는 2019년 10월, 2020년 8월 악성 댓글에 시달려 온 여성연예인, 스포츠선수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각각 연예뉴스·스포츠뉴스의 댓글 서비스를 폐지했고, 네이버도 2020년 3월과 8월 연예·스포츠뉴스 댓글창 운영을 잠정 중단했음. 그러나 성범죄기사 댓글폐지에 대한 양대 포털의 반응은 소극적, 방어적임. 카카오는 “아직까지 이 사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으나 고객센터 등 다양한 루트로 피해자나 일반이용자가 의견을 개진하면 언제든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네이버는 “각 언론사가 자사 기사 댓글을 직접 관리하는 구조로 바꾸었기 때문에 개별 기사의 특성을 파악해 댓글난을 달거나 제한하는 부분을 네이버가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임.

18) 박다해(2021), “온라인 공간은 어떻게 성범죄 ‘2차 피해’를 확산하나”, 「여성과 인권」, 2021년 상반기, 통권 제25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pp.18-20.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특히 디지털성범죄와 연관되어 폭행, 강요, 협박 등으로 심화되는 과정을 거치며 마지막 단계에 조건만남, 성매매 알선, 강요 등에 노출되고 있어 성폭력과 성매매의 중첩적인 피해를 입게 됨.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될 경우 피해자들은 경제적 빈곤을 대물림하거나 성착취 피해까지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등 성인 이후 삶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시기의 성매매, 성착취 상황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종합지원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성착취 피해에 노출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찾아 상담, 의료·법률, 치료·회복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전문상담사를 통한 상담 및 사례관리, 진로·진학 및 자립·자활교육지원, 일시적 생활유지를 위한 긴급구조지원비(숙박비·식비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센터의 가동으로 법적 근거에 의한 종합지원 전담지원센터의 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현재 지자체별로 17개소의 운영기관을 계획하고 있으나 11개소만 운영되고 있음. 운영기관이 마련되지 않은 대구, 울산, 충남, 경남, 제주, 세종의 경우 발견, 교육, 홍보, 사례관리의 공백이 있을 것임.

■ 정책 요구

<젠더폭력 처벌 및 집행>

-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¹⁹⁾
- 성매매여성 인권보호 및 성매매 확산 방지를 위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 지원과 성매매 수요차단의 관점에서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함. 법률명은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성매매를 성매수로 전환하여 성매수 행위만을 처벌하고 성매수 알선 등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며, 성매매피해자를 성매수 대상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피해자 보호와 지원>

- 권력형 성범죄 사건 처리체계 작동방안 마련
 - 기존의 사건처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에서의 상하관계로 인하여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피해자에게 고통만 안기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 필요.

19) 비동의간음죄 논의와 관련하여 유형력의 정도가 낮은 행위를 새롭게 성폭력범죄로 포섭하여 구성요건 1개를 추가하는 안으로 할 것인가, 성폭력법체계 전반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의 성폭력 처벌 규정들을 기본법인 「형법」으로 통합 배치하고 ‘간음’을 ‘성교’로, ‘추행’을 ‘성적 행동’으로 수정하는 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 비동의간음죄 구성요건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경우’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독일법은 전자를, 영국법은 후자를 선택하고 있음. 대륙법 체계를 견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형법체계에서는 독일법 형태를 따를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담고 있는 영국법 형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온라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 성범죄 기사 댓글제한에 관한 온라인 플랫폼 책임부과 및 관련 법 개정 필요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들이 마주하게 되는 수사, 교육, 상담기관 등에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바라보고 보호와 지원을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른 적극적인 실천방안 모색
- 아동·청소년성착취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구조적 책임강화를 위해 모바일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책임 강화
- 적극적 조치로서의 중장기적 성착취아동·청소년정책 수립, 중층적이고 구조적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문제를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 지원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을 통한 그루밍에 대한 가이드 마련 및 홍보,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차별철폐를 위한 홍보 및 예방활동
- 지적 장애, 정신질환 등 위기집단에 대한 사업 및 특화기관 설립에 관한 방안 마련²⁰⁾

<피해 방지와 예방>

○ 공공부문, 학교 등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중앙행정기관 소속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에서 기관장의 교육참여 증진 방안(기관평가에 지표로 반영하는 등의 방안 등) 모색
- 체육인, 문화예술인, 민간기업 종사자, 일반인에 대한 폭력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디지털문해교육, 성인지감수성 교육, 인권교육 체계 수립 및 시행

- 디지털 매체 이용에 있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교육, 성차별을 하지 않는 교육,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초·중등학교 시절부터 의무화 필요.

20) 정혜원(2020), “성착취 피해청소년 지원강화 방안:성착취 피해청소년 통합지원”,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강화방안, 토론회자료집,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9.23. pp.21-23.

▣ 현황과 필요성

- 다양해지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목표와 내용을 위한 교육 분야의 성범죄, 성평등 등 개념의 명확한 확립이 필요함.⁶⁾
- 디지털 성범죄는 성매매 등과 비교할 때 범죄자 대비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현재 활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2015학교성교육표준안 등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내용으로 실제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스쿨미투, n번방 등 교육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성범죄가 발생하고 이 중 교원이 가해자인 경우가 다수 발생, 이에 대한 예방적 교육이 시급한 상황임.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3년간 학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 점검, 올해부터 학교와 기관에 연2회 의무점검을 안내해왔음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이 발생함.⁷⁾ 화장실, 탈의실 보건실, 학생 휴게실 등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여성혐오적 범죄에 적합한 대응을 마련하여 교육현장의 실질적 성평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2014년부터 교육부가 교사 성범죄근절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했으나 이는 경징계차원, 징계 만료 후에는 별다른 제약 없이 교단 복귀가 가능함.
- 교육부 차원의 성범죄 교원 처벌은 현재 징계 수위에 따라 ‘최대 10년간 담임을 맡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정도임.
- 스쿨미투 가해자 교사에 대한 신상 공개도 공개하도록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가해자 신상과 처리 과정의 공개를 꺼려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스쿨미투 고발 학생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할 시 학교, 교사 차원에서 위협을 가하거나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다수 발생함. 이후에도 가해교사와 피해학생이 철저히 분리되지 않은 채 사실 여부를 확인,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2019년 12월, ①양성평등정책과 ②성희롱·성폭력 근절정책 수립의 2개 분과로 구성하고, 여성·인권·교육·법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 15인을 위촉하여 교육분야 양성평등교육정책 추진기반 강화 목적, ‘남녀평등교육심의회’가 출범함.
- 2021년 8월에 이르러서야 ‘스쿨미투’ 관련 사안을 ‘남녀평등교육심의회’가 전담하는 내용의 남녀평등교육심의회위원회 개정안이 통과되어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근

절관련 분과위원회를 분리 운영하게 됨. 성희롱·성폭력범죄근절 및 성평등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2019년 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직을 주요 8개 부처에 신설, 여성가족부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담당관이 설치운영됨.

- 잦은 인사 교체와 공백으로 교육 분야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가까움. 성희롱 성폭력 전담기구는 현재 교육청(17개 교육청 중 14개) 차원에서 운영 중으로 전체 교육청에 대한 설치가 급선무이며, 최소인원, 겸직 등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실질적 학내 성폭력 해결 전담 인원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특히 대학의 경우, 성희롱 성폭력 담당기구 운영은 대학 내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내규와 지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구성원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교육 직업 훈련 영역 성평등지수는 보건영역(95.7)에 이어 두 번째로 93.9점을 기록,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치를 보임(여가부, 2020)⁸⁾.
-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상의 혐오표현과 사회적 사건의 발생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
- 교육 분야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형태의 교육과 접근이 요구됨.

■ 정책 요구

<젠더폭력 예방·대응 교육 의무화>

- 교원,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의무화
 - 성평등교육의 정규교육과정 내 필수 이수 기준 제정
 - 교육내용 및 과정에 대한 성평등지표 개발 및 적용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포괄적 성평등교육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의무화
 -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정규교육과정 내 의무화
 - 포괄적 성평등교육 매뉴얼 개발 및 정규교육 과정 내 의무화, 질 관리
- 예비교원 성평등교육 강화 및 자격화
 - 예비교원 성평등교육 필수 이수 시간 확대 (양성 단계 4회 이상→최소 8회 이상)
 - 교원자격 취득 시 관련 시험으로 자격 부여 법 제정

<교육현장의 실질적 성평등 제고>

- 학교 현장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점검 체계 확립 및 지표 개발 적용

- 학내 불법촬영 카메라 수시/불시 점검 체계 확립
- 안심 점검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제고
- 학내 성평등 및 안전에 대한 지표 개발 및 적용

○ **성범죄 교원 교원자격박탈 및 신상공개 의무화**

- 성범죄 이력이 있는 교원에 대한 영구적 교원자격 박탈 관련 법 제정 및 강제성 부여
- 성범죄 교원의 신상 및 처리 과정 결과 공개 의무화
- 교육 분야 성범죄 처리와 결과 공개에 대한 투명성 제고

○ **피해학생 보호 시스템 확립 및 강화**

- 교육현장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법 제정
- 학내 성범죄 특수성 고려 1:1 신고 및 상담 핫라인 구축

<교육분야 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 확립 및 네트워크 구축>

○ **교육분야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확립**

- 성평등담당부서로서의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실 역할 확립 및 내실
- 교육부 주도 각 부처별 양성평등정책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양성평등정책 업무 겸직 금지 및 전문성 제고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역할 확립 및 권한 확대
- 성평등교육정책 컨트롤 타워 확립을 통한 교육분야 성평등정책의 분절성 극복

○ **성평등네트워크 구축 및 시스템 체계화**

- 각 교육지원청(176개)/대학별 성평등센터 설치
- 성평등센터장의 적합성 검증 및 전문성 제고
- 성희롱·성폭력전담기구 운영 내실화 및 실태 조사 결과 공개 명시 의무화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확대>

○ **성평등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교육 강화**

- 학부모 성평등교육 확대 실시
- 유아동청소년 대상 콘텐츠 성평등모니터링 평가 기준 개발 및 적용
- 언론, 미디어 콘텐츠 종사자 성평등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 확대, 사전이수제 도입
- 청소년 성평등문화 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다각화

<청년 부문>

목표	청년의 삶에 경제적 정의를!
제안 과제	<p>1. 청년 주거지원 제도 확대</p> <p>1) 청년 월세지원제도의 대상자 기준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본적인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제도 마련 ○ 사회초년생의 청년 또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경제활동 현황 분석에 따른 대상자 기준 완화 <p>2) 지역별 청년 주거지원 제도 가이드라인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제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지역별 청년인구, 청년경제 활동 및 부동산현황과의 연계 분석 ○ 지자체별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절한 지원제도 마련 상황 파악을 위한 청년지원제도 전담인력확충 <p>2. 청년 고용 지원계획 확대</p> <p>1)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대상 취업 준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 개선 ○ 학생들의 취업기술 습득을 위한 비대면 실습 방안 연구 및 마련 ○ 기업과 고졸청년의 연계를 위한 고졸청년 인재 육성모형 구축 <p>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내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 ○ 여성청년의 취업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여성 미취업자 실태조사 진행 <p>3.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p> <p>1) 대학교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본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 분석 ○ 등록금 완화에 따른 교육의 질 하향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마련 <p>2) 사립대학교 등록금 책정 기준 및 등록금 사용에 관한 감사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책정 기준 및 사용·관리에 대한 감시체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립대학 대학등록금 책정 기준 공개 의무화, 공개에 대한 투명성 제고○ 사립대학교 등록금 책정 근거 분석을 위한 공적회계시스템 구축, 종합 감사 확대
--	--

<청년>

- 청년의 삶에 경제적 정의를! -

- 한국의 현재 청년들은 생활의 기본조건인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임. 청년들의 취업률 및 임금은 향상하지 않지만, 부동산 경제는 끝없이 치솟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제도들의 사각지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커지고 있음. 따라서 청년의 실제적인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확대가 필요함.
- 직업계 고등학교는 한국 산업 발전을 위해 학생들에게 직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을 교육하여 졸업 후 이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교육시설임. 그러나 직업계고등학교의 인원미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습의 부재, 이로 인한 사교육비 발생, 지원체제의 낮은 효과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효과적인 훈련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를 위해 직업계고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개선하고, 충분한 기술 습득을 위해 기업과의 연계 및 비대면 실습방안 연구 등이 필요함.
- 청년들은 한국 사회에서의 생존을 위해 취업시장에 뛰어들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률은 향상하지 않음. 이에 따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청년 취업난이 해결되기엔 역부족임. 이를 위해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확대하고, 여성미취업자 실태조사를 통한 여성 청년 취업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함.
- 대학교육이 선택이 아닌 기본이 되는 지금, 대학의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국가장학금제도는, 실질적인 고지서상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제도가 아닌, 성적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선별적 복지시스템임. 따라서 보편적으로 모든 청년들이 동등하게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고지서 상의 반값등록금을 실현을 요구함.

정책 1 청년 주거지원 제도 확대

1) 청년 월세지원제도의 대상자 확대

■ 현황과 필요성

-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 월세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대상자는 최대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월 소득 약 210만원 이하)의 청년으로,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임. 또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함.
-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기준에 따라 총 22,000명의 청년을 지원함. 서울시 전체 청년인구가 2,319천명(2018년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전체 청년인구의 약 0.95%에 해당하는 인원으로서 매우 적은 인원임.
- 현재 원룸, 투룸 등의 주택이 낮은 임차보증금과 높은 월세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위의 기준은 부동산현황에 맞지 않은 기준임.
- 또한 지원 금액은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되며, 생애 1회만 지원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청년 월세지원제도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에는 일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함.

■ 정책 요구

- 근본적인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제도 마련
- 사회초년생의 청년 또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경제활동 현황 분석에 따른 대상자 기준 완화

2) 지역별 청년 주거지원 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 현황과 필요성

- 현재 청년 주거지원에 관련한 제도는 지자체 재량으로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각 지역에서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청년들이 발생함.
- 지자체별로 청년인구의 증감, 청년인구 경제활동 상황, 부동산 경제 등의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지원제도는 오히려 비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지역별 현황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 정책 요구

- 지원제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지역별 청년인구, 청년경제활동 및 부동산현황과의 연계 분석
- 지자체별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절한 지원제도 마련 상황 파악을 위한 청년지원제도 전담인력확충

정책 2 청년 고용지원 계획 확대

1)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대상 취업 준비 지원

■ 현황과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교내 실습이 불가능해짐. 이에 따라 추후 진행되는 현장실습을 대비하여 사교육인 학원강습으로 실습을 대비하는 학생이 늘어남.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현장실습생을 받지 않게 되어 직업계고 학생들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전부 배우기 전에 취업전선에 뛰어들게 됨. 이로 인해 취업보다 대학진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함. 21)실제 2020년 충북의 직업계고 졸업생 중 대학 진학을 선택한 비율은 47.6%에 달했고, 취업자는 전체의 25.7%에 그침.
- 효과적인 능력중심 인사제도 확산 및 산업계 변화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과 함께 직업계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과제로 대두됨.

■ 정책 요구

- 학생들의 취업기술 습득을 위한 비대면 실습 방안 연구 및 마련
- 기업과 고졸청년의 연계를 위한 고졸청년 인재 육성모형 구축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확대

■ 현황과 필요성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취업애로청년’이라고 규정함. 이때 취업애로청년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 일반대학, 전문대학 등을 중퇴한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등으로 규정함. 이때 대학교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남.
- 또한 2021년 9월의 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표를 살펴보면, 남성의 고용률은 70.7%이나, 여성 고용률은 52.3%에 그침. 이와 같은 성별에 따른 고용률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를 세부적으로 진행하여 성별에 따

21) 기사 “취업 절벽”...대학 택하는 직업계 고교생, KBS NEWS, 2021.01.18

른 취업률과 근로형태, 취업직종, 실업 및 미취업 유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미취업자의 취업 실태 및 지원계획 수립에 여성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계
획을 별도 마련하여야함.

■ 정책 요구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내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
- 여성청년의 취업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적인 여성 미취업자 실태조사 진행

1) 대학교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

■ 현황과 필요성

- 2011년에 진행된 반값등록금 투쟁을 통해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국가장학금제도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하며 등록금 50% 이상의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전체 1/3 수준에 그침. 2021년 1학기 기준,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 I 유형 + 다자녀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41.1%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을 지원 받은 학생도 32.9%에 그침.
- <2019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총 2316명의 학생들 중 67.5%가 ‘고지서 상 등록금 인하’에 응답하였고, ‘국가장학금 운영 개선’과 ‘국가장학금 예산 확충’의 문제는 각각 45.8%, 36.7%의 응답률을 보임. 이는 국가장학금 제도의 개선보다 고지서 상 등록금 인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나타냄.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예산이 2조 8천억원 정도 추가되면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고 하였으나, 분석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이 천차만별임.
-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 시, 등록금 인하로 인한 교육의 질 하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함.

■ 정책 요구

- 근본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 분석
- 교육의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2) 사립대학교 등록금 책정 기준 및 등록금 사용에 관한 감사 확대

■ 현황과 필요성

-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책정 기준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운영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짐.
-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발전계획의 성과 및 교육여건, 대학운영의 책무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진단하나, 등록금 책정 및 사용에 대한 진단은 진행하지 않음.
-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대학교에 등교하지 않게 되면서, 대학 시설사용빈도의 감소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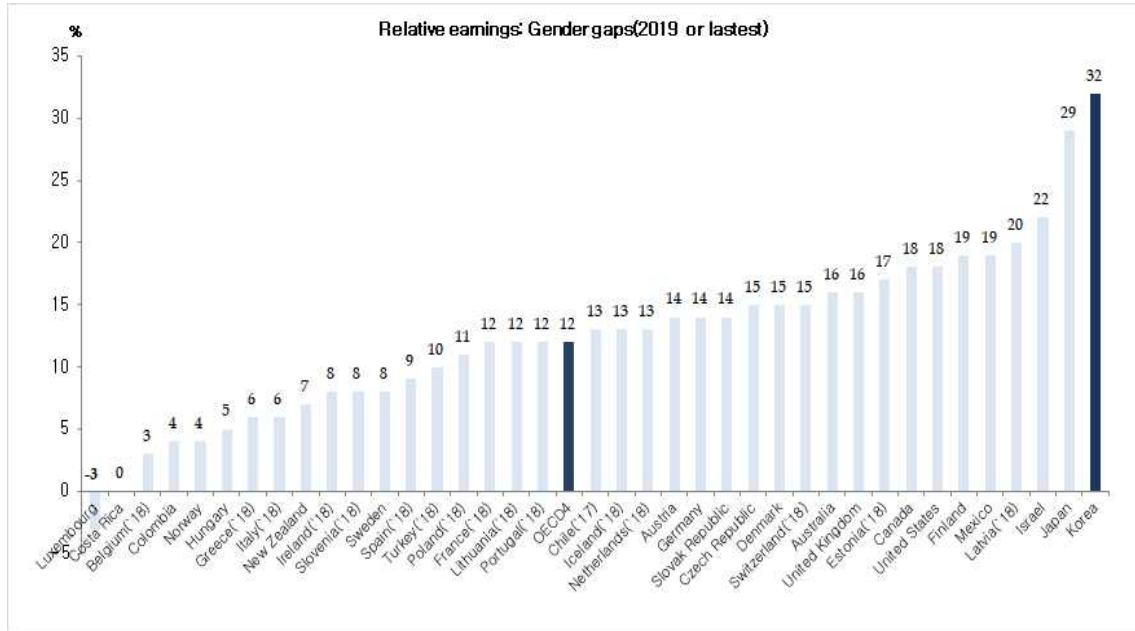
온라인 수업 전환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향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낮아지지 않아 등록금 책정 기준 공개 및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한 요구가 커짐.

■ 정책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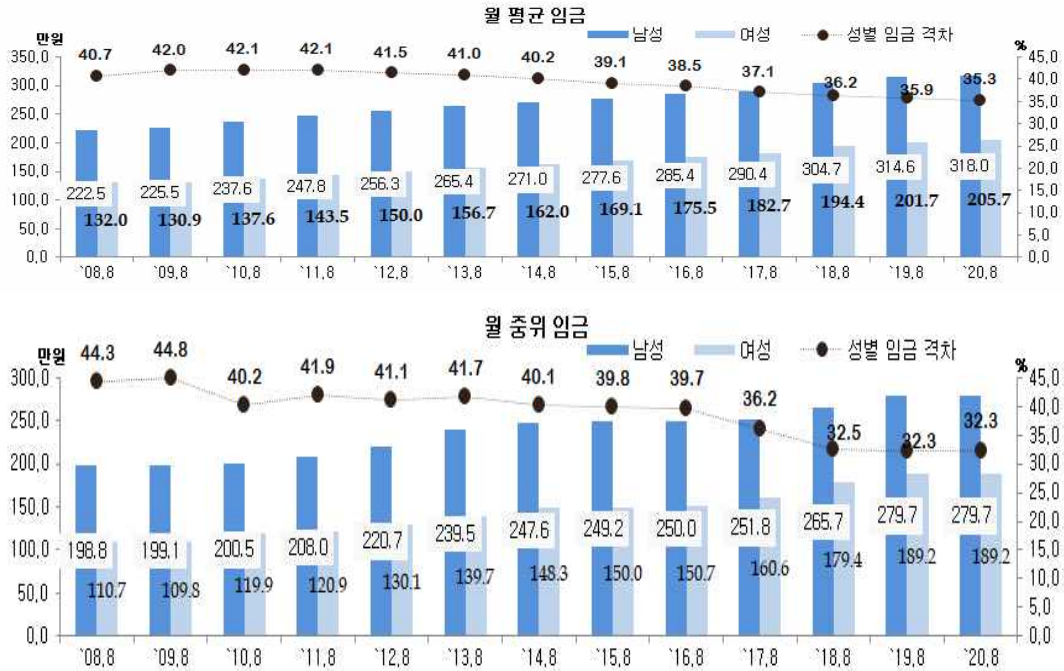
- 정부 차원에서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책정 기준 및 사용·관리에 대한 감시체제 도입
- 사립대학의 대학등록금 책정 기준 공개 의무화, 공개에 대한 투명성 제고
-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등록금 책정근거를 분석할 수 있는 공적 회계 시스템 구축 혹은 종합감사 확대

<주: 성평등부문 관련 표>

1) 자료: OECD(2021), 「Employment Outlook」 재구성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각 년도 (8월 기준) 분석



3) 전기택 외(2021, 진행 중 연구). 「기업의 '성평등 공시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분	대상	공시대상 (*21년 기준)	공시방법	성별 공시내용		
				직원 현황	채용	임금
공공	공공기관	370개소 (부설기관 포함)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	○	○
	지방공사·공단	412개소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시스템(클린아이)	○	○	○
	지방출자·출연기관	798개소		○	X	X
민간	상장법인	대기업집단 64개소 (2,268개) 등	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DART)	○	X	○
	금융권	국내은행 18개소 등	당해 은행,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	○	△

4) 젠더폭력 처벌공백 해소를 위한 법제정비

-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기준 상향
 - 형법 개정(2020.5.19. 개정, 시행) :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와 관련하여 피해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로 미성년자 보호공백 해소
- 디지털성범죄 처벌강화 및 처벌범위 확대
 - 형법 개정(2020.5.19. 개정, 시행) :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경우 처벌하여 강간 등의 경우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고 준비, 모의만 한 경우도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처벌 신설(2020.3.24 개정, 6.25 시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벌금형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법정형 상향,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처벌,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신설,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 처벌(2020.5.19. 개정, 2020.11.20 시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변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 처벌신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 형량 강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 구입·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2020.6.2. 개정, 시행),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도입(2021.3.23. 개정, 9.24. 시행)

- 그 외에도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에 대해 범죄수익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보다 원활한 환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0.5.19. 개정, 시행),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개정(2020.6.9. 개정, 12.10 시행),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이 우선되어야 하고, 특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20.6.9 개정, 12.10 시행)이 이루어졌음.
-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성착취물의 제작, 유포, 소지, 범죄수익 창출, 유포협박, 사전 범행모의, 오프라인 범행연계 등으로 지능화, 조직화되어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진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 법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 방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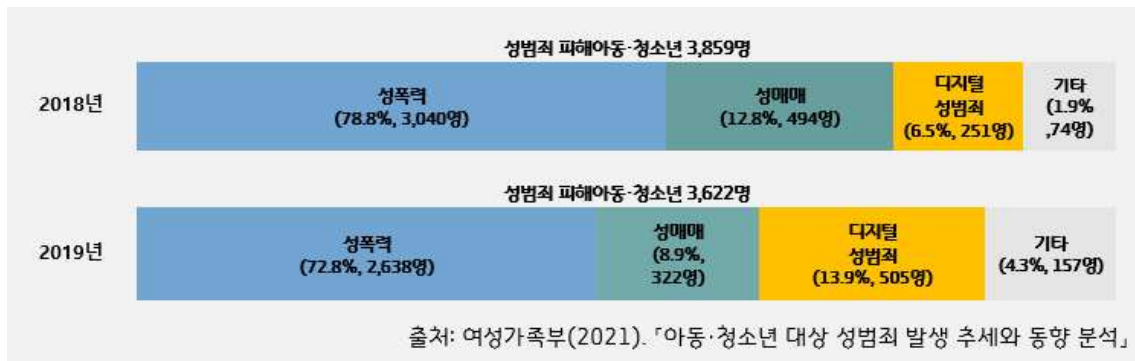
5) 스토킹처벌법 및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제정됨(2021.4.20. 제정, 10.21. 시행). 이 법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것.
-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만에 법이 제정되어 스토킹 처벌의 길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그러나 법의 문제점으로 스토킹피해자를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된 점, ‘스토킹행위’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는 피해자에게 피해입증의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범죄 성립의 쟁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사에 반하여’가 아닌 ‘상대방의 동의 없이’로 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음. 또한 스토킹의 유형을 나열하고 있는데 나열한 유형이외의 다양한 유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나열된 행위이외에 포괄적 규정을 두어야 하는 점,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삭제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등의 개념과 관련 범죄군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의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조기 발견·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2021.4.20. 제정, 2023.1.1. 시행)되었음. 우리나라는 2013년 「형법」 일부 개정을 통해 인신매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15년에는 유엔의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비준하였음. 그러나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는 의정서 등 국제사회와 달리 현행「형법」은 ‘인신매매’를 ‘매매(買賣)’에 한정하여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다른 개별 법률에도 관련 규정이 산재하여, 피해자 조기 발견·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 법이 제정되었음.

6) 다양해지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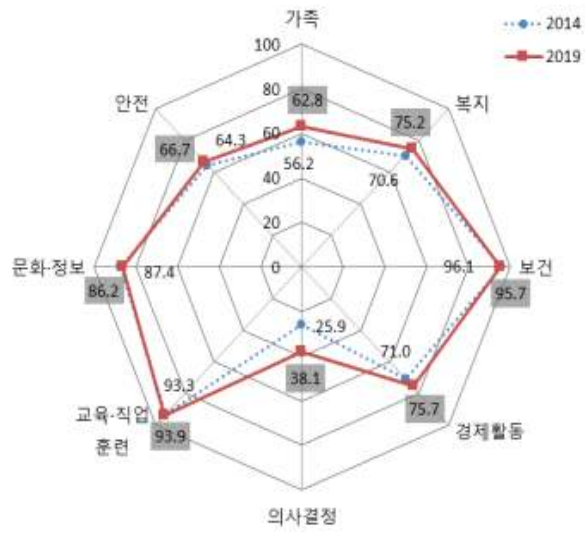


7) 2015-2018 지방청별 학교 내 몰래카메라범죄 발생 현황(초중고대학교 합계)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남부	북부								
2015년	77	18	3	2	6	1	-	7	13	8	2	-	2	3	1	4	4	3
2016년	86	7	5	19	6	2	3	-	24	1	6	2	5	-	1	3	1	1
2017년	115	19	7	5	6	4	1	3	29	8	8	6	7	2	1	4	5	-
2018년	173	29	7	5	8	5	10	8	41	12	8	9	6	9	4	5	7	-

출처: 학교내 '몰카' 범죄 매년 증가 <http://www.kinde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423>

8) 분야별 성평등수준



출처: 여성가족부(2020). 2020년 국가성평등보고서